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98호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추가 채용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2명)

채용 분야 (지원코드)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담당 업무
일반행정 (인턴01)	1	행동강령과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조사 ○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 및 현장 확인 지원 ○ 행동강령 사건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 행동강령 위반 관련 판례 및 해외 사례 조사 지원
	1	제도개선총괄과 (세종특별자치시)	○ 제도개선 실태조사 업무 지원 ○ 제도개선 이행점검 업무 지원

※ 합격자의 희망부서, 부서 요청사항 등에 따라 부서 배치 예정

※ 참여 활동 내용은 추후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26. 10월 중 예정)로부터 '26. 12. 31.까지

○ **(보 수)**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세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 **담당업무 수행 및 정책참여 활동(권익위 주관행사)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0.12.) 기준

○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등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11①) >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2.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3.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가 2회 미만**인 자

- 단, '23 ~ '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1회 참여기회 허용**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청년인턴 참여 이력**을 **반드시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가점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6.9.27.)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

항목	관련 법령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지원코드별 채용 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법정 가점 미적용)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에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인턴지원서, 2. 가점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가 지원한 경우, 응시자격 충족여부만 확인하여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예정

- 청년인재DB 및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https://www.acrc.go.kr)에 2차 면접 일정 등 게재 예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뉴스 등을 참고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 개별 질의·응답(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 토대)을 통해 평정요소를 상(上), 중(中), 하(下)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

< 평정요소 >

① 참여의지 및 진로 연계성 : 인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 진로계획과의 연계 정도
②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전문성 확보 여부
③ 정책제안의 참신·실현가능성 : 정책제안서의 문제 인식,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 질문에 대한 응답의 명확성, 면접 태도
⑤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 공무수행에 대한 태도, 책임감, 공정성 등 자세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 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6. 9. 18.(금) ~ 9. 27.(일)

○ 원서접수 : 2026. 9. 18.(금) ~ 9. 27.(일),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10. 2.(금)

○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6. 10. 2.(금) ~ 10. 7.(수), 18:00

○ 면접시험일 : 2026. 10. 12.(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이며,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10. 16.(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청년인재DB(www.2030db.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27.(일), 18:00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 (원칙) 청년DB로 원서를 제출하며, e-mail 및 등기우편으로 원서접수 불가
* (예외) 지원 자격 기준일('26.10.12.)에 만 19세가 되는 자[지원 시점에 청년DB 회원가입이 불가한 자(만 18세)]는 전자우편(jhsw104@korea.kr)으로 제출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등 포함)을 사용하며, 별도 양식으로 제출 금지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 **분할·중복 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 서류

가. 아래 제출 서류 중 ①, ③, ④번의 경우,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함
나.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
다. 공통서류 전체를 순서에 따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필수)	① **응시원서 1부 : [붙임1] 서식**
	② **청년인턴 지원서 1부 : [붙임2]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4] 서식**
	④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 [붙임5] 서식**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붙임6] 발급방법 참조**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확인용(2회 이상 여부)**
	⑥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서류전형 합격자 (해당자)	⑦ 정책제안서 ⑧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⑨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⑩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⑪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경우 증빙서류 ⑫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집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필요서류 상세 별도 공고**

6. 유의 사항

○ 동일한 기간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7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담당자기재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3. 가산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5%) ☐ 취업지원대상자(10%) ☐ 사회형평대상자					
4. 희망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예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3.4.~2025.8.31		6개월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법무

③ **성명, 생년월일**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2001.10.15.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⑦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붙임2> 청년인턴 지원서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붙임3> 정책제안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성 명		연락처		e-mail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⑫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에 따른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❶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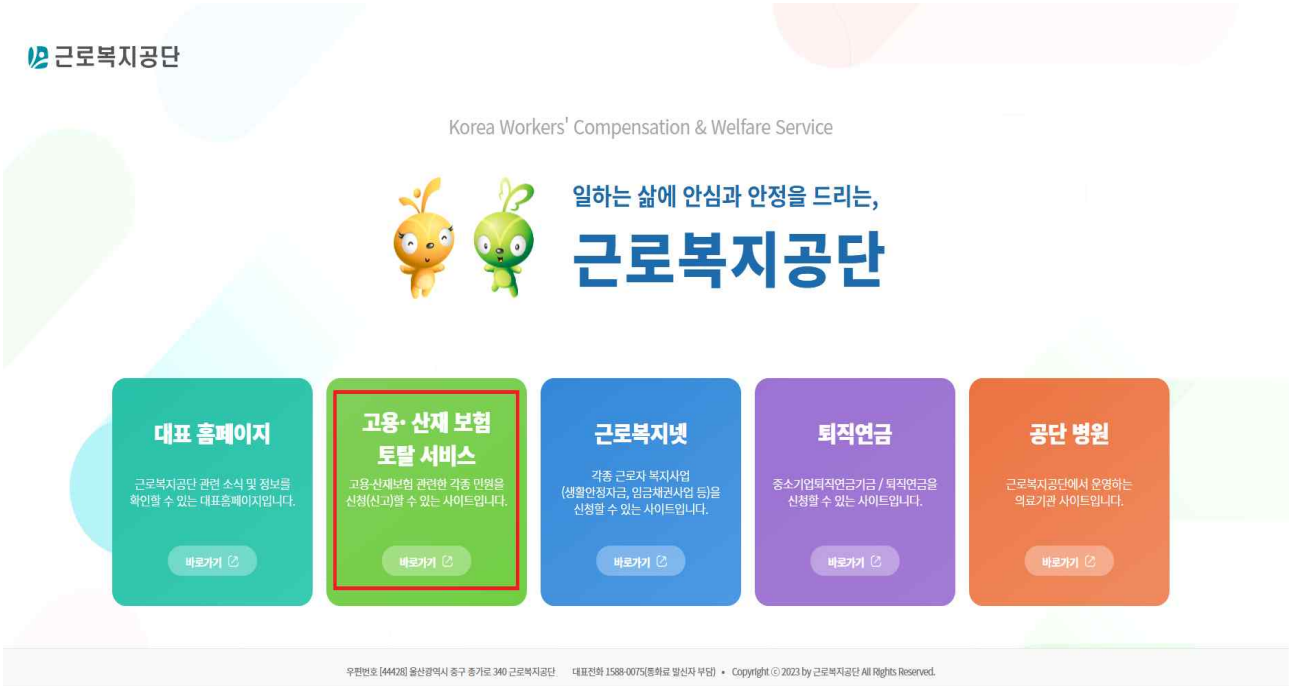

❷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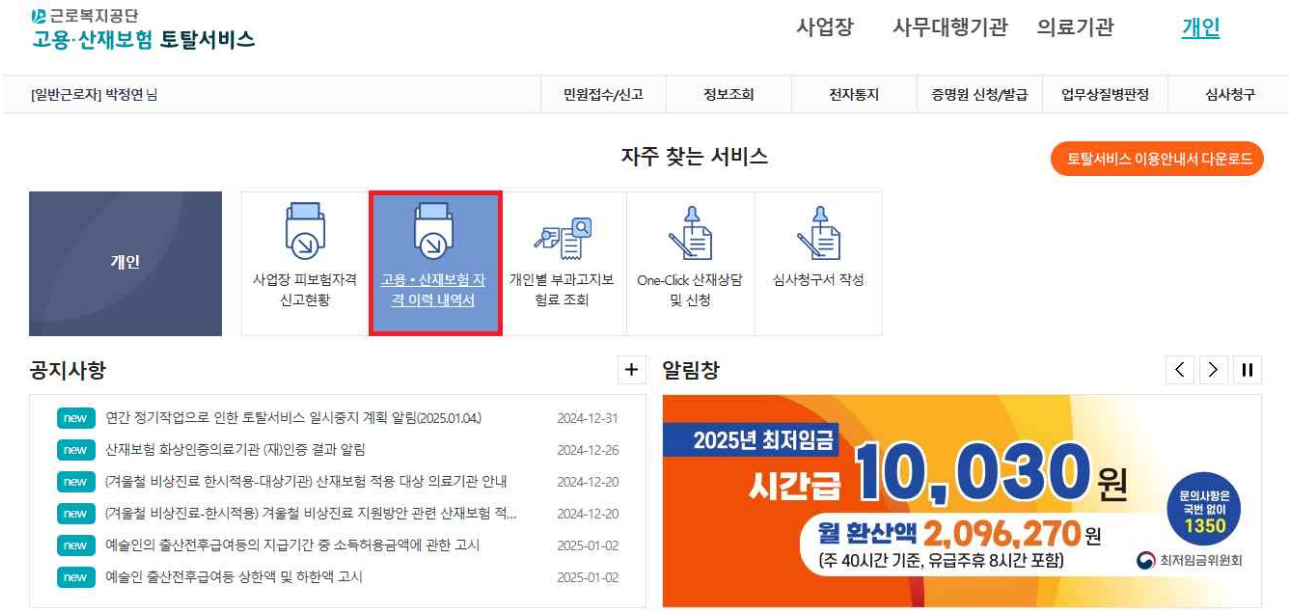

❹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❺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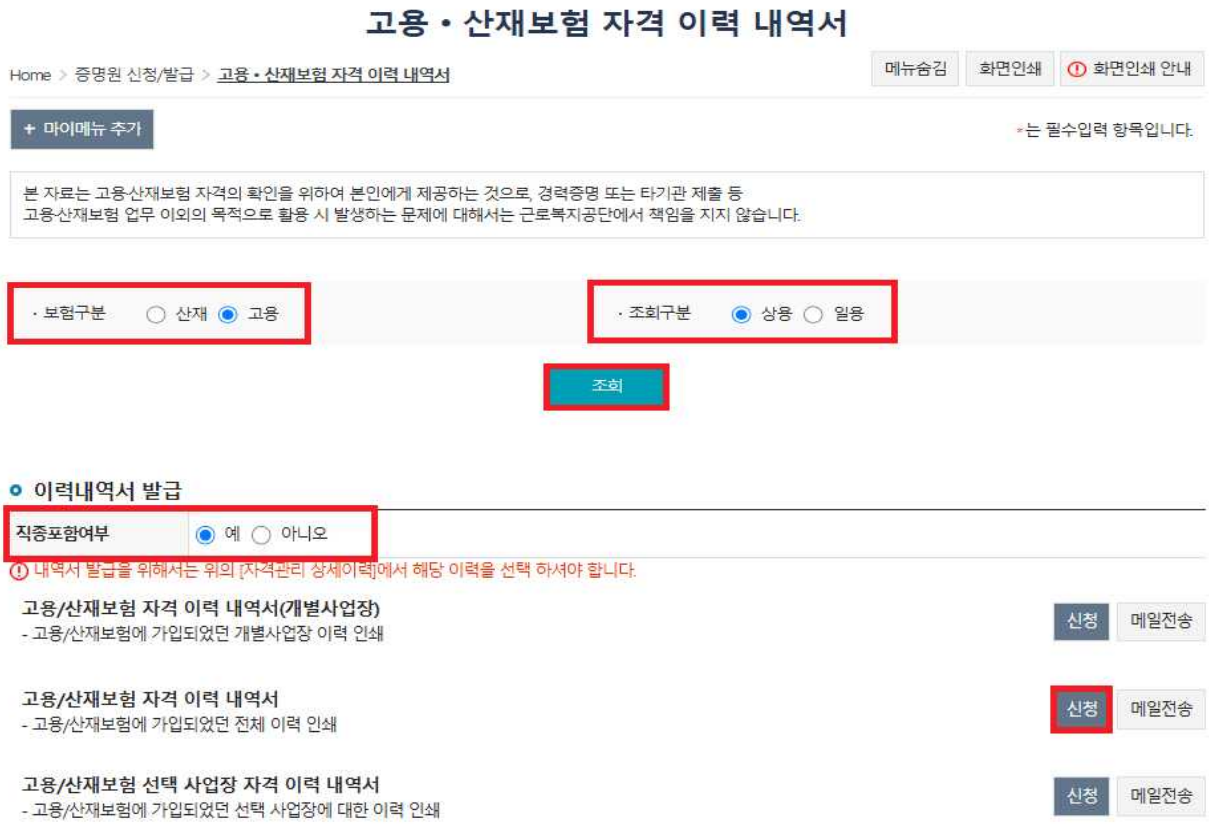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2025-7 J
신청인	성 명	박	생년월일	년 10월 3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